



# 2018년 베트남 사회보험법의 변화와 전망

박재명 (베트남 하노이 법과대학교 노동법·사회보장법 박사과정)

## ■ 머리말

베트남 사회보험법<sup>1)</sup> 일부 규정이 2018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가지게 되면서 해당 분야에 상당한 변화들이 예상된다.<sup>2)</sup> 여기에는 사회보험료 납부기간에 따른 퇴직연금 수령 비율의 변화와 베트남 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의무적 사회보험 가입, 단기 근로계약자의 사회보험 적용, 사회보험료 징수 표준 변경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변화는 근로자에 대한 공적부조를 강화함과 동시에 노무관리비용의 상승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며 인건비나 임금이 노동관계에 있어 가장 민감한 요소로 작용하는 베트남 노동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이러한 변화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것이 노동관계에 미칠 영향을 전망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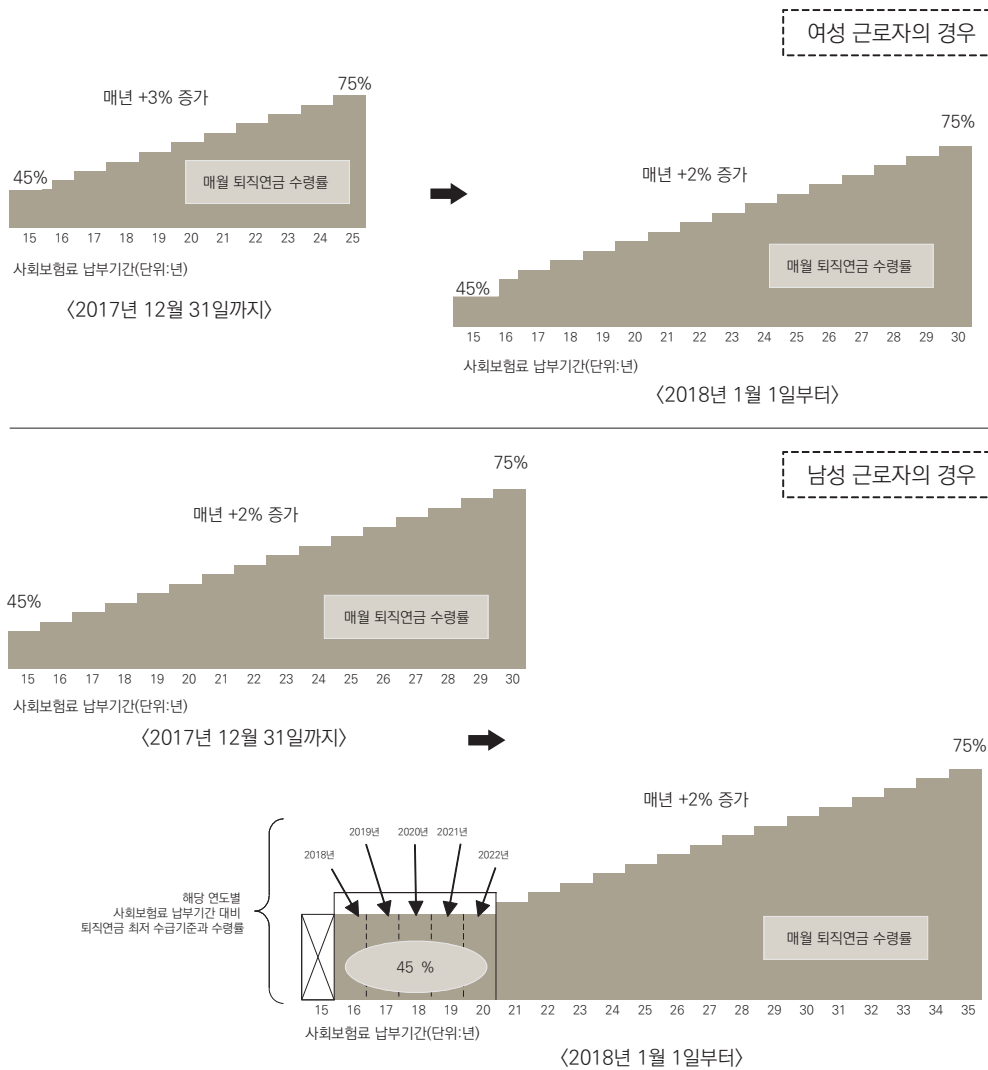
1) 베트남 사회보험은 근로자의 질병 또는 출산, 산업재해, 직업병, 정년, 사망에 따른 수입 상실 및 감소를 보장(베트남 사회보험법 제3조 제1항)하는 제도로 노동보험이라고도 한다.

2) 2014년 11월 개정된 사회보험법(58/2014/QH13)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는데 그중 일부 규정은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한다(동법 제124조 제1항).

## ■ 개정 내용

### 퇴직연금의 변화

[그림 1] 사회보험료 납부기간에 따른 퇴직연금 수령률 변화<sup>3)</sup>



3) 사회보험법 제56조 제1항 및 제2항.

퇴직연금제도는 남녀 근로자에게 각각 다르게 적용된다. 현재 여성 근로자의 경우 최소 15년간 사회보험료를 납부(퇴직연금 수령 최저기준)하면 기존 월급의 45%를 퇴직 후 매달 퇴직연금으로 받게 되며 보험료 납부 15년차부터 만기인 25년차까지 매년 3%씩 퇴직연금 수령 비율이 증가해 만기 시 기존 월급의 75%를 퇴직 후 매달 퇴직연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18년부터 변경되는 규정에 따르면 사회보험료 납부 만기가 25년에서 30년으로 늘어나고 매년 3%씩 가산되던 퇴직연금 수령 비율은 2%로 하향 조정된다.

남성 근로자의 경우에는 최소 15년간 사회보험료를 납부(퇴직연금 수령 최저기준)하면 기존 월급의 45%를 퇴직 후 매달 퇴직연금으로 받게 되며 보험료 납부 15년차부터 만기인 30년차까지 매년 2%씩 퇴직연금 수령 비율이 증가해 만기 시 기존 월급의 75%를 매달 퇴직연금으로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퇴직연금의 최소 수령 자격이 [그림 1]과 같이 2018년 사회보험료 16년 납부, 2019년 사회보험료 17년 납부, 2020년 사회보험료 18년 납부, 2021년 사회보험료 19년 납부, 2022년 사회보험료 20년 납부로 변경되며 이 기간 퇴직연금 수령률은 45%로 동결된다. 또한 2022년부터는 사회보험료 납부기간이 최소 20

<표 1> 2018~2022년 퇴직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납부 및 퇴직연금 수령관계

	2017년 12월 31일까지	2018년 1월 1일부터
여성 근로자	25년간 사회보험료 납부 시 기존임금의 75%의 퇴직연금 수령	30년간 사회보험료 납부 시 기존임금의 75%의 퇴직연금 수령
남성 근로자	30년간 사회보험료 납부 시 기존임금의 75%의 퇴직연금 수령	2018년 퇴직, 31년간 사회보험료 납부 시 기존임금의 75%의 퇴직연금 수령
		2019년 퇴직, 32년간 사회보험료 납부 시 기존임금의 75%의 퇴직연금 수령
		2020년 퇴직, 33년간 사회보험료 납부 시 기존임금의 75%의 퇴직연금 수령
		2021년 퇴직, 34년간 사회보험료 납부 시 기존임금의 75%의 퇴직연금 수령
		2022년 퇴직, 35년간 사회보험료 납부 시 기존임금의 75%의 퇴직연금 수령
비고	※ 퇴직연금의 최대 수령률은 기존임금의 75%이며 이 기존임금이란 근로자가 사회보험료 납부 시 산정 기준이 되는 임금을 말한다.	

년 이상이어야 퇴직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되며(수령률 45%), 현행 30년인 사회보험료 납부 만기도 2018년부터 2022년까지 해마다 1년씩 증가해 35년으로 늘어나게 된다.

만약 퇴직연금 수령을 위한 최저 사회보험료 납부기간을 충족시키지 못한 근로자는 납부했던 보험료를 관련 규정에 따라 퇴직 시 일시에 반환받을 수 있으며 퇴직 후 퇴직연금 수급을 원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 부담으로 잔여 보험료를 납부하고 납부한 기간만큼의 퇴직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sup>4)</sup> 또한 퇴직 전 노동력 상실의 경우에도 해당 규정과 정도에 따라 사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sup>5)</sup>

## 퇴직연금 변경의 배경과 영향

베트남은 근로자가 40년 동안 퇴직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고 퇴직 후 20년 동안 연금을 수령하는 것을 퇴직연금 정책의 원칙으로 하였으나 실제로 근로자들은 평균 28년 동안 퇴직연금 보험료(월급의 21%, 2017년 6월 이전 기준)를 납부하고 퇴직 후 평균 24.7년 동안 퇴직연금(평균 기준 월급의 70.2%)을 수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현행 수준인 평균 28개년의 보험료 납부기간을 원칙적인 정책의 기준에 대입할 경우 근로자들은 퇴직 후 8년 동안만 퇴직연금을 수령하게 되는 현실에 놓이게 된다. 이와 더불어 베트남 사회가 고령화 초기단계에 진입하게 되면서 연금 수급자의 증가 문제가 더해져 현행 퇴직연금제도의 수정은 불가피했다.<sup>6)</sup> 이에 정부는 현재 비교적 이르게 규정된 정년퇴직 연령을 높이고 사회보험 납부기간

4) 위의 경우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일시수령은 사회보험법 제60조, 사회보험시행 규정(93/2015/QH13) 및 관련 시행규칙(115/2015/NĐ-CP) 제8조에 따르며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추가납부는 사회보험법 제76조와 노동보훈사회부 시행규칙(Thông tư 01), 정부 사회보험 시행규칙(134/CP)에 따른다.

5) 사회보험 시행규칙(59/2015/TT-BLĐTBXH) 제16조는 근로자의 근로능력 상실에 따른 사회보험 수급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6) 2017년 11월 29일 베트남 사회보장 관련 세미나에서 응웬쯔영장(Nguyễn Trường Giang) 사회보험국 국장과 다오응옥중(Đào Ngọc Dung) 노동보훈사회부 장관의 설명을 종합(<http://dantri.com.vn/viec-lam/nghi-huu-som-tuoi-tho-gia-tang-can-doi-quy-bhxx-ra-sao-20171129141501526.htm>).

을 늘리면서 퇴직연금 수령률을 감소시키는 정책을 단행하기에 이르렀다.<sup>7)</sup>

사회보험제도를 시행한 1995년 당시 남녀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납부 만기는 30년으로 동일했으나 2002년 여성 근로자의 낮은 사회보험 가입률을 개선하기 위해 노동법과 사회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 2003년 여성 근로자의 사회보험 만기를 30년에서 25년으로 단축하고, 매년 퇴직연금 수령률을 2%에서 3%로 증가시켰다. 그러나 이번 퇴직연금규정 변화로 남성 근로자의 사회보험 납부 만기가 앞으로 5년간(2018~2022년) 매년 1년씩 늘어나는 반면, 여성 근로자의 납부 만기는 당장 내년(2018년)부터 5년 늘어나게 되어 늘어난 사회보험 납부 만기의 부담감을 덜고 법정 퇴직연령 상승예정으로 인한 퇴직연금 수급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곧 정년퇴직을 앞둔 여성 근로자들의 조기퇴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것은 정년퇴직자와 연금수급자를 일시적으로 증가시켜 노동시장과 사회보험 재정에 부담을 주는 등의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sup>8)</sup>

## 사회보험 가입 대상 확대

베트남의 의무적 사회보험 가입 대상에 3개월 미만의 근로계약자와 베트남 내 외국인 근로자가 포함된다. 3개월 미만의 근로계약자는 1~3개월까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를 의미한다. 현행 사회보험법 제2조는 사회보험 가입 대상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3~12개월, 15세 미만의 특별규정)과 국가 공무원 및 공기업 직원을 그 범위로 규정하고 있고(동법 제2조 제1항) 3개월 미만의 근로계약자도 이 규정에 포함하고 있었으나 그 시행이 2018년 1월 1일로 유예된 것이다(동법 제124조 제1항).

베트남 내 외국인 근로자란 사회보험법에 따라 정부가 발급한 노동허가증(giấy phép lao

7) 베트남 노동법 개정(안)은 현행 퇴직연령 남자 만 60세, 여자 만 55세의 퇴직연령을 유지하는 방안과 이를 남자 만 62세, 여자 만 60세로 늘리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노동법 개정(안) 제148조). 참고로 2017년 현재 평균 은퇴연령은 남자 55.6세이며 여자는 52.6세이고 평균수명은 남자 78.1세, 여자 79.5세이다.

8) 노동법 제36조는 근로자가 사회보험료 납부기간을 충족하고, 동법 제187조에 따른 연금 수령 연령(남자 만 60세, 여자 만 55세)에 도달한 경우 정년에 따른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động) 또는 취업증명서(chứng chỉ hành nghề), 취업허가증(giấy phép hành nghề)을 보유한 자로서 이들은 2018년 1월 1일부터 의무적 사회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사회보험법 제2조 제2항 및 제124조 제1항). 이는 계속 증가하는 베트남 내 외국인 근로자에게 사회보장 혜택을 주는 동시에 외국인 근로자의 보험 가입으로 보험재정의 안정성을 높이려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sup>9)</sup> 그러나 국가 간 사회보험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어 있지 않으면 베트남 내 해당 외국인 근로자들은 자국과 베트남에서 사회보험 이중가입과 퇴직연금 수급보장, 가입기간 합산, 연금 송금과 같은 문제에 직면할 위험성이 있으며 외국에서 근로하는 베트남 근로자들 역시 동일한 상황에 놓이게 되어 베트남 정부가 모든 베트남 내 외국인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사회보험 가입을 강제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도 있다.<sup>10)</sup> 베트남 내 외국인의 사회보험 가입에 대한 시행령(안)에 따른 보험 항목과 요율은 <표 2>와 같다.

<표 2> 베트남 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 시행령(안)<sup>11)</sup>

	사회보험료 요율					
	사회보험			의료보험	실업보험	합계
	퇴직·사망연금	산업재해(직업병)	질병·출산			
기업	14%	1%	3%	3%	-	21%
근로자	8%	-	-	1.5%	-	9.5%
	총합계					30.5%
사회보험료 = 월 임금 × 각 보험 계정 산출 비율						
※ 베트남 내 외국인 근로자의 의료보험은 현행 규정(3104/BHXH-PTHU)에 의해 규율						

9) 베트남 내 외국인 근로자는 2004년 12,602명에서 2016년 약 84,000명으로 증가했고 이들 대부분은 정식 노동허가를 갖춘 고급인력으로 사회보험료 납부 능력이 충분할 것으로 파악되었다 (Nguyễn Thị Bích, Chế Mỹ Phương Đài(2016), p.29~34).

10) Đỗ Phương Đông(2016), p.47.

11) 사회보험법 시행령(안) 제11조 및 제12조(베트남 전자법률도서관, <https://thuvienphapluat.vn/van-ban/Bao-hiem/Nghi-dinh-huong-dan-bao-hiem-xa-hoi-bat-buoc-doi-voi-nguoi-lao-dong-la-cong-dan-ngoai-2017-346012.aspx>). 참고로 베트남의 현행 사회보험료 징수 요율은 다음과 같다.

## 사회보험료 징수 표준 확대

현행 베트남 사회보험료 징수 표준은 임금(기본급)+수당<sup>12)</sup>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2018년 1월 1일부터 이를 임금(기본급)+수당+기타 보상금으로 변경한다.<sup>13)</sup> 여기서 기타 보상금이란 근로계약상 양 당사자가 협의하여 지급하기로 한 금원으로 통상(정기)적·비통상(비정기)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에 있어 지원하는 모든 형태의 금원(임금과 수당 제외)을 의미하며, 예를 들면 식대 또는 통신비, 유류비, 자녀 양육비, 통근비 등이 이에 해당한다.<sup>14)</sup>

이러한 변화에 따라 다음과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그동안 기타 보상금으로 분류되어 근로자에게 지급되던 금원·금품의 항목들이 사회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면 사용자의 보험료 지출이 증가하게 되고 이는 곧 경영상 비용 상승으로 이어져 사용자가 근로자 복지 차원의 혜택들을 대부분 폐지 또는 축소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위와 같이 사회보험료 산정 표준이 확대되면 보험료 납부 총액이 증대되어 퇴직연금 수급액이 증가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이미 실무상 ‘수당’ 항목과 ‘기타 보상금’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가 많아 실제로 그러한 효과가 거의 미미할 것이라는 주장이 우세하다.<sup>15)</sup>

	사회보험료 요율					
	사회보험			의료보험	실업보험	합계
	퇴직사망연금	산업재해(직업병)	질병출산			
기업	14%	0.5%	3%	3%	1%	21.5%
근로자	8%	-	-	1.5%	1%	10.5%
	총 합계					32%
사회보험료 = 월 임금 × 각 보험 계정 산출 비율						
※ 2017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현행 사회보험법 규정(595/QĐ-BHXH)에 근거						

12) 현행 사회보험 등에 관한 시행규칙(59/2015/TT-BLĐTBXH) 제30조 제1항 따라 사회보험 산정의 근거가 되는 수당 8가지는 ① 직무·직책수당 ② 책임수당 ③ 과중·유해·위험수당 ④ 근속수당 ⑤ 지역수당 ⑥ 이동(출장)수당 ⑦ 근로향상수당 ⑧ 유사수당(업무에 관한 수당명이 리스트에는 없지만 리스트 중 유사한 업무인 경우 지급하는 수당)이 있다.

13) 사회보험법 시행규칙(59/2015/TT-BLĐTBXH) 제30조 제2항.

14) 근로계약에 관한 시행규칙(47/2015/TT-BLĐTBXH) 제4조 제2항 및 3항.

15) Đỗ Quang Hải, Phạm Thị Th(2016), tr. 64~69.

## ■ 시사점

지금 베트남은 선진국들이 경험했던 사회보장 이슈들을 본격적으로 맞이하고 있다. 노동관계 관점에서 보면 사회보험료의 가파른 상승과 현재 논의되고 있는 정년퇴직 연령의 연장, 단기 근로계약자로의 사회보험 적용 확대 등은 제조업·수출 중심의 베트남 기업들과 인건비 등 원가 절감을 위해 베트남을 찾은 외국기업들에 상당한 부담을 안겨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반대로 현재 베트남의 열악한 사회보장체계를 한층 강화함으로써 근로자들의 권리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한다는 목적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근로자들은 노동생산성 향상을 통해 사용자의 부담을 상쇄시켜주는 등의 방법을 모색하고 사용자도 이러한 제도변화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상호 배려적인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다. **KLI**

---

---

### 참고문헌

---

---

- Đỗ Quang Hải, Phạm Thị Thi, “Một số vấn đề về việc hình thành, sử dụng và phát triển quỹ bảo hiểm xã hội theo Luật Bảo hiểm xã hội năm 2014”, 「Nhà nước và Pháp luật」, Viện Nhà nước và Pháp luật, Số 6/2016.
- Đỗ Phương Đông, “Điểm mới trong Luật Bảo hiểm xã hội”, 「Xây dựng Đảng. Ban Tổ chức Trung ương」, Số 4/2016.
- Nguyễn Thị Bích, Chế Mỹ Phương Đài, “Những điểm mới của Luật Bảo hiểm xã hội”, 「Tòa án nhân dân」, Tòa án nhân dân tối cao, Số 7/2016.